

구미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의연월일	2016. 2. .
발 의 자	양진오 의원 외 8명

구미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양진오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 연월일: 2016. 2.

발 의 자: 양진오, 권기만, 김복자
안장환, 안주찬, 윤영철
정근수, 정하영, 한성희

1. 제안이유

- 「지방재정법」의 출납 폐쇄기간이 변경됨에 따라 결산검사를 위한 지방의회 제1차 정례회를 6·7월에서 5·6월로 앞당겨 조정하는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
-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제1차 정례회로 조정하여 행정집행에 대해 보다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시와 견제를 실시하고 원활한 의정활동과 의회 운영을 도모코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제1차 정례회 집회 일자 조정(안 제4조 제1호)
 - 7월 7일 ⇒ 6월 2일(단, 시행일 2017년 1월 1일)
- 행정사무감사 시기 조정(안 제5조 제1항 및 제2항)
 - 제2차 정례회 ⇒ 제1차 정례회

3. 개정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관련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41조 및 제44조,
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54조

구미시 조례 제 호

구미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호 본문 중 “7월 7일”을 “6월 2일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안건을 심의·의결한다.

②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·의결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4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집회일) (생 략)	제4조(집회일) (현행과 같음)
1. 제1차 정례회는 매년 <u>7월 7일</u> 에 집회한다. 다만, 총선거(지방선거) 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 1일에 집회한다.	1. ----- <u>6월 2일</u> - -----. ----- -----.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제5조(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) ①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안건을 심 의 · 의결한다.	제5조(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) ①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 사무감사 실시와 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안건을 심의 · 의결 한다.
②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 감사 실시와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 · 의결한다.	②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 · 의결한다.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
관계 법령

[지방자치법]

제41조(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)

-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·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, 시·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,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.

제44조(정례회)

- ①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.
- ② 정례회의 집회일,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[지방자치법시행령]

제39조(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)

- ① 법 제4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한다.

제54조(정례회의 집회일 등)

- ① 법 제44조에 따른 정례회 중 제1차 정례회는 매년 5월·6월 중에, 제2차 정례회는 11월·12월 중에 열어야 한다. 다만,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9월·10월 중에 열 수 있다. <개정 2016.1.12.>

② 제1항에 따른 정례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제1차 정례회는 법 제134조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
2. 제2차 정례회는 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

③ 법 및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,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[시행일 : 2017.1.1.] 제54조 제1항